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7. 9 선고 2020나4176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7. 9 선고 2020나41761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2. 11 선고 2017가단16917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수현

피고, 항소인B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남돈

변론 종결 2020. 5. 21.

판결 선고 2020. 7. 9.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2. 11. 선고 2017가단16917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2,062,715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제1심판결의 이유 제3의 가.항 첫째 줄 '증인 L, K의 각 증언에'를 '갑 제4호증, 갑 제8호증의 1, 2의 기재, 증인 L, K의 증언에'로 고치는 것 외에는,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피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검토하여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은희

판사김은교

판사김지영